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서울북부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최경규
전화 02-3399-4302 / **팩스** 02-3399-4555

보 도 자 료
2019. 3. 7.(목)

자료문의 :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실
전화번호 : 02-3399-4965
주책임자 : 부장검사 박기종

서울 관내 특수학교 장애인 학대사건 수사 결과

-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(부장검사 박기종)는 서울 관내 ○○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 5명을 학대한 특수학교 교사 2명, 사회복무요원 3명 등 **총 5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2019. 3. 6. 불구속 기소**하였음
-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3명의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학대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,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,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**교사 2명, 사회복무요원 1명의 학대 범행을 추가로 밝혀 인지함**
- 아울러, 검찰은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, 서울도봉경찰서,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, 피해학생 및 보호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지원 등 **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**

1 피의자 및 피해자

- 피의자 : A(55세, 교사), B(여, 55세, 교사), C(23세, 사회복무요원), D(23세, 사회복무요원), E(21세, 사회복무요원)
- 피해자 : ○○ 특수학교 학생 甲(15세, 지적장애 1급), 乙(22세, 지적장애 1급), 丙(18세, 지적장애 1급), 丁(16세, 자폐성장애 1급), 戊(14세, 자폐성장애 1급)

※ '○○ 특수학교'는 서울 관내에 소재한 지적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정부 인가 사립특수학교임

2 범죄사실 요지

☐ 피의자 A(교사)

- '18. 5.경 점심시간에 피해자 甲(당시 14세)에게 고추냉이(일명 '와사비')를 강제로 먹이고, '18. 9.경 피해자에게 고추장을 강제로 먹여 학대 **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]**

☐ 피의자 B(교사)

- '18. 5.~9.경 총 6회에 걸쳐 C로 하여금 피해자 乙(당시 21세)을 외부와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1~2시간 정도씩 있게 하여 방임 **[장애인복지법위반]**

☐ 피의자 C(사회복무요원)

- '17. 6.경 주먹으로 피해자 丙(당시 17세)의 배, 등, 옆구리 부위를 5~6회 때려 폭행
- '18. 6. 25.경 피해자 乙이 책상 아래에 들어가자 의자로 책상 앞을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하고, '18. 9. 14.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~5회 때려 학대 **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, 장애인복지법위반]**
- '18. 6. 25.경 D, E가 피해자 乙을 캐비닛 안에 가둘 때 말리지 않고, 캐비닛의 위치를 알려주어 학대 방조 **[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]**

☐ 피의자 D(사회복무요원)

- '18. 4.~5.경 2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 丁(당시 15세)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
- '18. 6.~7.경 주먹으로 피해자 戊(당시 13세)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
- '18. 6. 25.경 E와 함께 피해자 乙을 캐비닛 안에 가두어 학대 **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, 장애인복지법위반]**

☐ 피의자 E(사회복무요원)

- '18. 4.~8.경 일주일에 2회 정도 피해자 戊을 계속 서 있게 하거나, '앉았다 일어났다'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, '18. 6.~7.경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학대
- '18. 6. 25.경 D와 함께 피해자 乙을 캐비닛 안에 가두어 학대 **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, 장애인복지법위반]**

3 수사 경과

- ‘18. 10. 2. ○○ 특수학교, 서울도봉경찰서에 수사의뢰
  - ○○ 특수학교는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인학대 제보를 받아서 수사의뢰
- ‘18. 11. 15. 경찰, 피의자 C, D, E에 대해 각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
- ‘18. 11. 19. 검찰, 보완수사지휘
- ‘18. 12. 28. 경찰, 피의자 C, D, E에 대해 각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
- ’19. 1. 30. ~ 3. 5. 검찰, 송치 후 보완조사
  - 피해자들의 보호자들 면담, 교사 등 참고인 조사, 피의자들 8회 조사
- ‘19. 1. 30. 피의자(사회복무요원) C의 장애인 乙에 대한 학대 범행 1건 추가로 인지
- ‘19. 2. 25. 피의자(교사) A, B의 아동·장애인 甲, 乙에 대한 학대 범행 8건 인지
- ‘19. 2. 26.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- 피해자 지원책, 학대 재발 방지책 등 논의
- ‘19. 3. 6. 피의자들 전원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

4 수사 의의 및 향후 대책

- 수사 결과, ○○ 특수학교에서 교사,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해 ‘17. 6.경부터 ’18. 9.경까지 지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대 행위가 장기간 적발되지 않은 채 지속되는 등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로 운영되어 왔음을 확인함
-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학생 학대사건을 수사 중,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, 유사사례 분석 등 철저한 수사로 교사 2명, 사회복무요원 1명의 학대 범행 총 9건을 추가로 밝혀내고, 피의자들이 초범임에도 전원 불구속 기소하는 등 장애인학대 범행에 대한 엄단 의지를 표명하였음
- 피해자 및 보호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예정이고, 향후 후유증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임
-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, 검찰은 향후에도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임.